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오성준 소유물건(2024타경106454)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해정

감정평가서번호: W240320-00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블유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 지 수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일억팔천구백만원정(₩189,000,000.-) | | | | | |
| 의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해정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오성준 (2024타경106454)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4.03.27 | 2024.03.26 ~ 2024.03.27 | 2024.03.28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세대 이 | 구분건물 | 1세대 하 여 | - 백 | 189,000,000 |
| | 합계 | | | | | ₩189,0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하는 "서울금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구분건물)에 대한 평가 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여기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3월 27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으며, 그 기간은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3월 27일임.

5. 감정평가방법

대상 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건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 조 제 2 항 및 제 16 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동법 제 12 조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 16 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그 구분의 합리적인 기준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연구(2021)”에서 제시한 「최종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연립·다세대)」를 적용하였으니 참고바람.

6. 그 밖의 사항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 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과거 평가사례나 외부 관찰, 이웃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 탐문조사에 의해 확인하였기에 실제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니 참고바람.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람.

<위반내역>

| 변동일 | 변동내용 | 원인 |
|------------|----------------------------------|-----------------------|
| 2018.04.19 | 주택과-17281(18.4.1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 [패널/패널, 16㎡, 주거 무단증축] |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6 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2. 대상물건 개요

| | | |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6-36 외 1 필지 | | | | | |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23 나길 27 | | | | | | |
| 건물명칭 | 코코트리뷰 | | | |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지붕 | | 평스라브 | | |
| 대지면적(m ²) | 403.7 | | 연면적(m ²) | | 659.18 | | |
| 건축면적(m ²) | 241.56 | | 주용도 | | 공동주택 | | |
| 건폐율(%) | 59.84 | | 용적률(%) | | 163.28 | | |
| 총세대수 | 15 세대 | | 사용승인일 | | 2018.04.10 | | |
| 기호 | 동 | 층 | 호 | 전유면적(m ²) | 공용면적(m ²) | 면적합계(m ²) | 대지권(m ²) |
| 1 | - | 4 | 404 | 24.44 | 4.34 | 28.78 | 17.63 |

주 1: 위 사항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 2: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 공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함.

3.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 사례 | 소재지 | 건물명 | 층 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거래금액(원) 거래단가(원/㎡) |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
|----|---------------|---------|----------|-------------|------------|-----------------------------|--------------------------|
| 1 | 시흥동 826-00 | 첼시하우스 7 | 4 400 | 28.57 | 17.2 | 228,000,000 (@7,980,000) | 2022.03.29 2019.07.12 |
| 2 | 시흥동 827-0 | 신흥뜨란채 | 5 500 | 30.415 | 17.366 | 221,000,000 (@7,266,000) | 2022.06.27 2017.11.28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 거래단가는 전유면적 당 거래단가임.

(2) 비교사례의 선정

본건과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례로서, 위치별 효용 등 물적사항의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사례인 <사례 1>을 선정함.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1.00).

5. 시점수정

(1) 산정방법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 등 있다고 판단되는 서남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2021년 06월 = 100 기준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01.7 | 101.6 | 101.6 | 101.6 | 101.5 | 101.5 | 101.4 | 101.3 | 101.1 | 100.9 | 100.2 | 99.4 |
| 2023년 | 98.7 | 98.2 | 97.7 | 97.3 | 96.9 | 96.5 | 96.5 | 96.5 | 96.6 | 96.6 | 96.6 | 96.5 |
| 2024년 | 96.4 | 96.4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2) 시점수정치 산출

| | | |
|------------------|---------|--------------------------------|
| 비교사례의 매매 당시 가격지수 | 101.6 | 2022.02 |
| 본건 기준시점 당시 가격지수 | 96.4 | 2024.02(가장 최근 고시된 지수 적용) |
| 시점 수정치 | 0.94882 | $96.4 / 101.6 \approx 0.94882$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하 “기준시점 등”이라 한다)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음. 다만, 기준시점 등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면서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기준시점 등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 등이 속하는 달의 지수로 비교하였음.

6. 가치형성요인 비교

(1)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

| 조건 | 항목 |
|---------|---|
| 단지 외부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
| 단지 내부요인 |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
| 호별 요인 |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
| 기타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 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 | 단지외부요인 | 단지내부요인 | 호별요인 | 기타요인 | 누계 |
|----|--------|--------|------|------|-------|
| 1 | 1.00 | 1.00 | 1.02 | 1.00 | 1.020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호별요인(전유면적의 크기, 테라스 유무 등 우세, 실사용 면적 등 열세) 우세함.

7. 비준가액

| 기호 | 거래사례 단가(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면적비교 (㎡) | 산출가액(원) | 비준가액(원) |
|----|-----------------|------|---------|--------------|-------------|-------------|-------------|
| 1 | 7,980,000 | 1.00 | 0.94882 | 1.020 | 24.44 | 188,750,493 | 189,000,000 |

주: 비준가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처리하였음.

III.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부동산 탐문내용

본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탐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유사물건의 가격(호가) 수준 및 임대료 수준은 아래와 같음.

| | |
|-----------|---------------------------|
| 가격(호가) 수준 | 700 만 ~ 800 만/㎡(전유면적) |
| 임대료 수준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90%내외 수준이었음. |

2. 인근 평가사례

| 소재지 | 건물명 | 층 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평가 목적 | 감정평가액(원) 평가단가(원/㎡)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
|-----------------|----------------|----------|-------------|------------|----------|-----------------------------|--------------------------|
| 시흥동 826-00 외 | 코코트리뷰 | 5 500 | 29.89 | 21.56 | 기타 담보 | 226,000,000 (@7,561,000) | 2022.02.09 2018.04.10 |
| 시흥동 823-00 외 | 첼시하우스 2 제비동 | 4 400 | 28.86 | 16.87 | 법원경매 | 234,000,000 (@8,108,000) | 2023.12.05 2016.12.09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KAPA HUB)

3. 최근 1년 낙찰가율 통계

단위: %, 건

| 지역통계 | | 서울특별시 | | | 금천구 | | | 시흥동 | | |
|-----------|-----|----------|------------|----------|----------|------------|----------|----------|------------|----------|
| 기간 | 용도 | 낙찰 가율 | 평균 낙찰가율 | 낙찰 건수 | 낙찰 가율 | 평균 낙찰가율 | 낙찰 건수 | 낙찰 가율 | 평균 낙찰가율 | 낙찰 건수 |
| 1년간 평균 | 다세대 | 74.47% | 75.49% | 935 | 65.77% | 71.53% | 66 | 72.18% | 70.52% | 28 |
| 6개월 평균 | 다세대 | 73.72% | 74.61% | 557 | 58.79% | 63.40% | 38 | 61.80% | 58.37% | 14 |

출처: 부동산태인 경매낙찰통계, 다세대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6 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동법 제 12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고 비준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기호 | 동/층/호 | 감정평가액 | 비고 |
|----|-----------|--------------------|-----------------------------|
| 1 | 4 층 404 호 | 189,000,000 | @7,733,000 원/m ² |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 |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3나길 27 | 826-36 826-37 코코 트리뷰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 | | | | | | |
| | | | | | | 1층 | 13.16 | | | | |
| | | | | | | 2층 | 175.9 | | | | |
| | | | | | | 3층 | 175.9 | | | | |
| | | | | | | 4층 | 161.1 | | | | |
| | | | | | | 5층 | 133.12 | | | | |
| | | | | | | 옥탑1층 (연면적제외) | 13.16 | | | | |
| | | | | |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4.9 | | | |
| | | | | | (2) | " | 826-37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8.8 | |
| | | | | | 1 | | | (내)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4호 | 24.44 | 24.44 |
| | | | 소유권 | (1),(2)x----- | 17.63 | | | | | | |
| | | | 대지권 | (1),(2)x----- | 403.7 | 17.6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189,000,000.- | | | |
| 이 하 | | | | | 여 | 백 | | | | | |

부동산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금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10)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상세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전자식공동현관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부동산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약 6m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9)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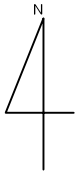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아래와 같이 임차권설정 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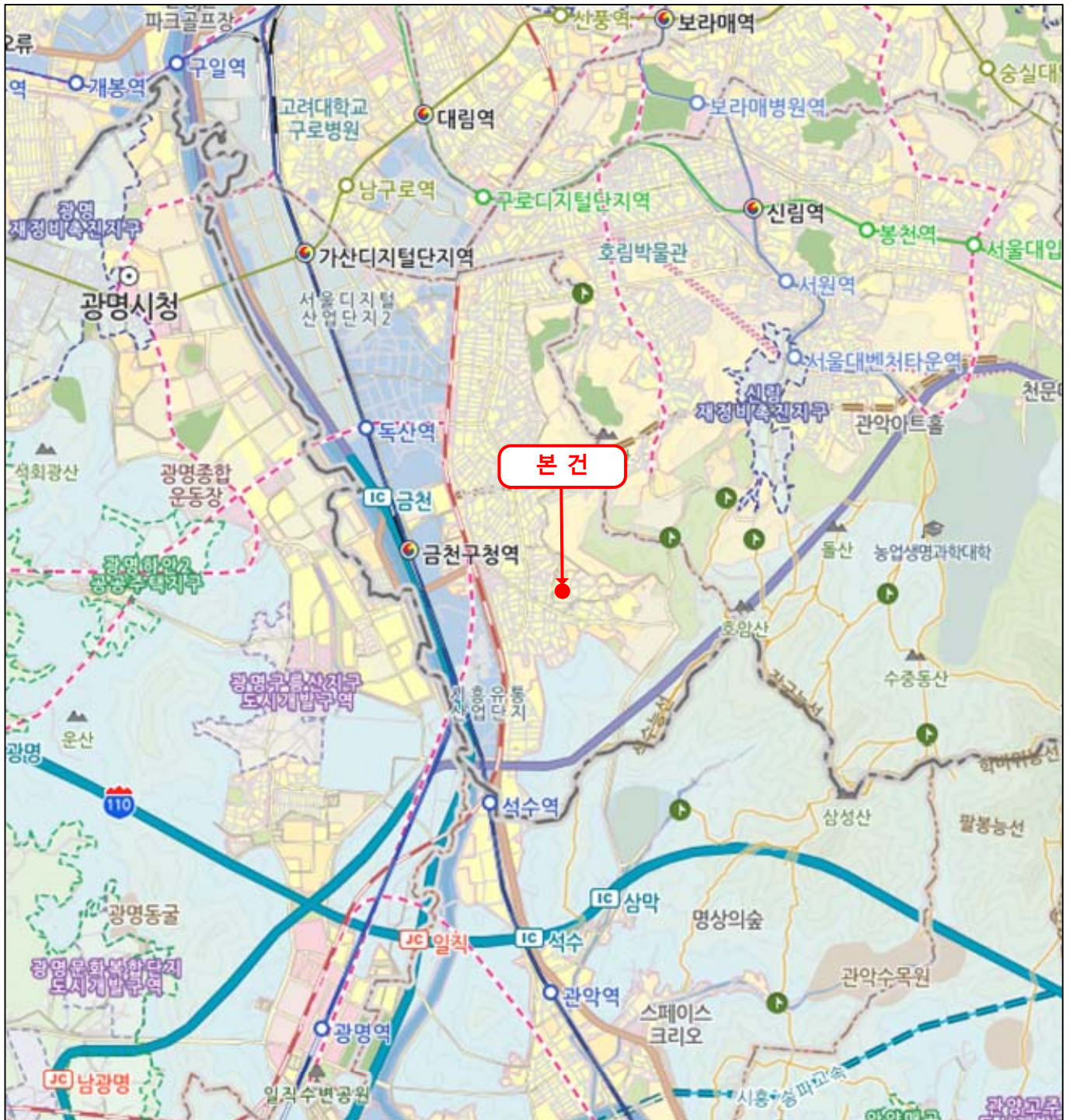
임차보증금 : 금206,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 2018년7월24일
 임차권자 : 1.망김동기의 상속인 김정한
 2.망김동기의 상속인 김연순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광역 위치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6-36외 코코트리뷰 제4층 제4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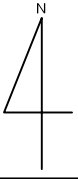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6-36외 코코트리뷰 제4층 제4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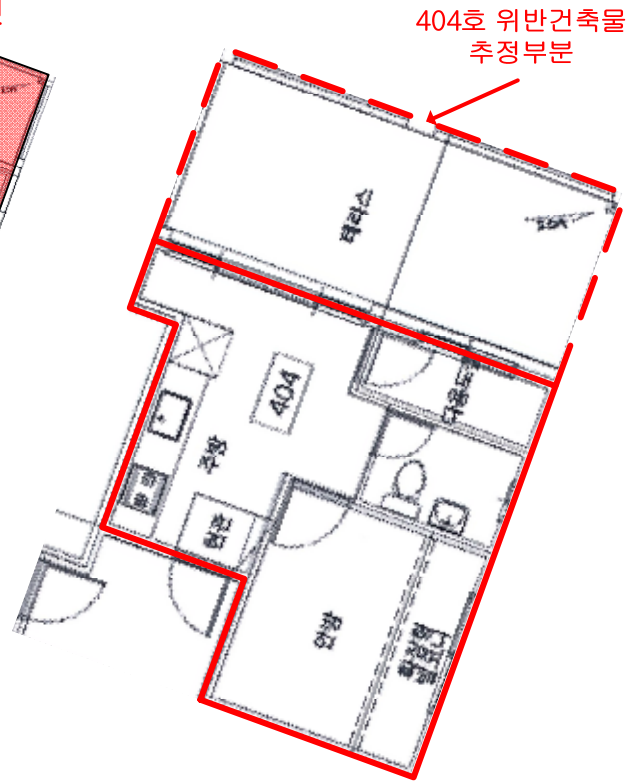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6-36외 코코트리뷰 제4층 제404호

호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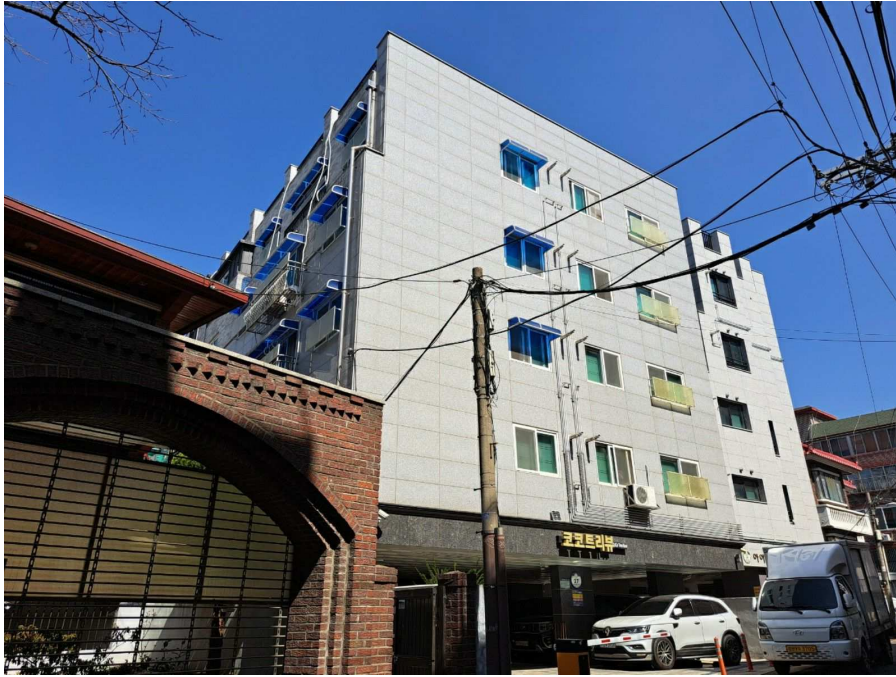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 등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Scale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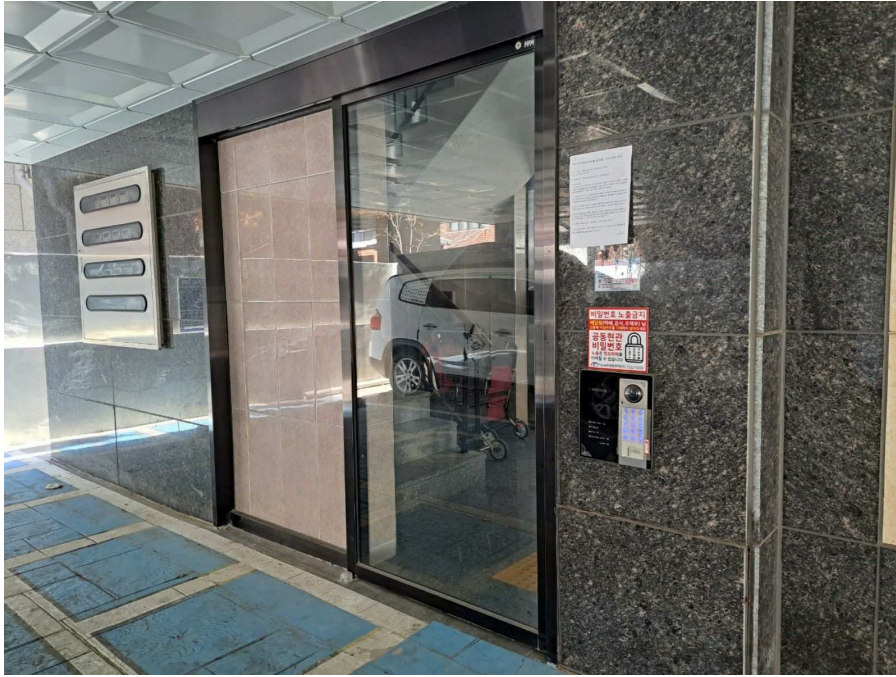


본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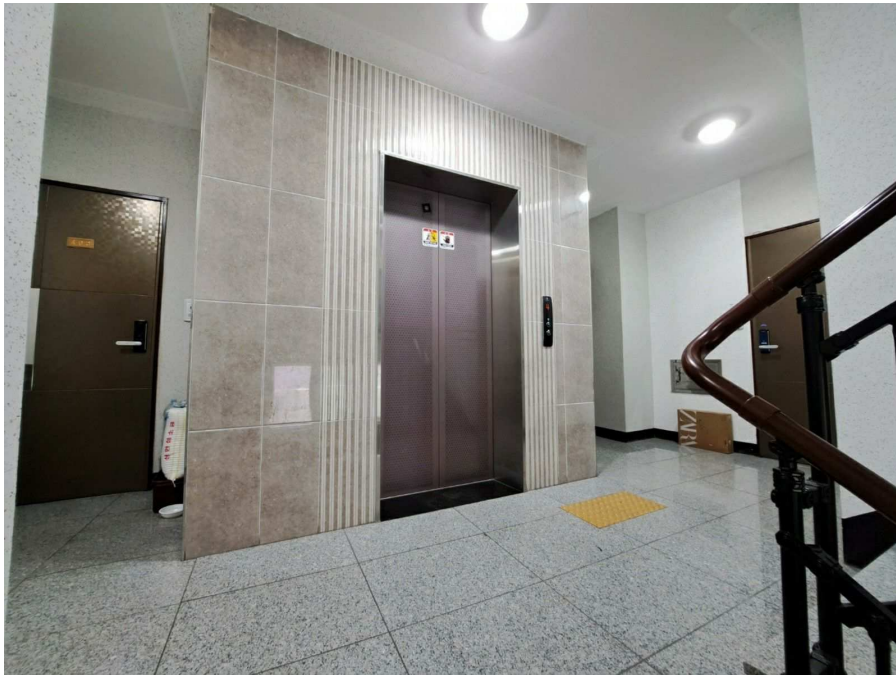


주위 전경

사 진 용 지



1층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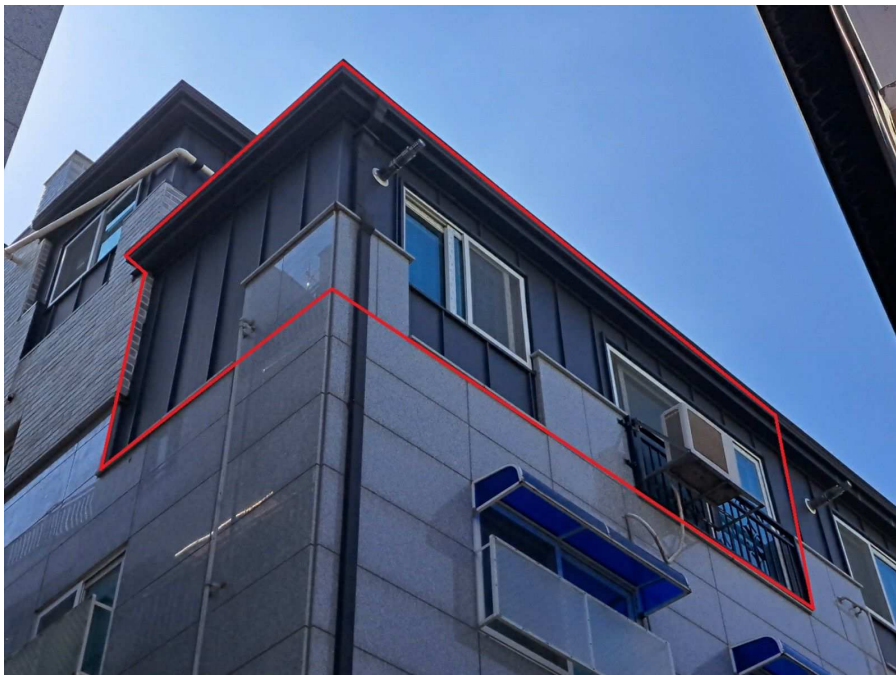


본건 앞 복도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호수 출입문



위반건축물 추정부분